

울산지방법원 2022. 6. 8 선고 2021가단123375 판결 [경정등기말소청구의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

담당변호사 박준상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4. 27.

판 결 선 고 2022. 6. 8.

주 문

1. 피고는,

가.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3/7 지분에 관하여,

나. 원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2/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
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는 망 D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의 배우자이고, 원고 B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이다.

나. 망인은 1974. 11. 7.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를 매수한 뒤 1979. 2. 2.경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(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총칭한다)을 신축하여 소유하던 중 1997. 3. 1. 사망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.

다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주식회사 E가 원고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. 4. 28.경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피고 명의로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1997. 3. 1.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하여 상속등기가 경로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대위 상속등기’라 한다).

라. 피고는 2016. 5. 23.경 원고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단독상속인으로 하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대위상속등기의 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‘2016. 5. 23.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’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로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경정등기’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음에도 피고가 2016. 5. 23.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로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는바,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의 상속지분인 3/7 지분에

관하여, 원고 B에게 상속지분인 2/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와 보전을 위탁받았고 망인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수차례 표현하였으며 원고들은 망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, 피고는 원고들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이 사건 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성

별지